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0
----------	------

제출년월일 : 2022. 11. 9.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교육경비의 정의 관련 법 조항 개정에 따른 수정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방법 변경

주요내용

- 교육경비의 정의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제11조제8항으로 수정(안 제2조)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고등학교의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통해 받는 것으로 변경(안 제16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4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 9. 14. ~ 2022. 10. 4.(21일)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5
- 방침결정문 : 붙임6

< 붙임 1 >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을 “통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교육청소년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이 세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이 승 범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진 영 (행정 345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경비”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p> <p>제1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정의)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 ----- ----- ----- -----.</p> <p>제1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 ----- ----- ----- ----- 통하여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